

#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720
----------	-----

제출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나. 지하철 안전 및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하철 노후시설 정비,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신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관련법령 : (공통)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주요 사업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설치
- 노후역사 환경개선(리모델링) 사업 등

## 다. 출자의 필요성

-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에의 예산 지원 필요
- 지하철 안전문제 및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정부에서도 추경예산 지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적극적 대응 필요
- 다만,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추경 예산지원 없이는 관련 대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총괄팀 정인경 (☎2133-4335)